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

2022. 11.



고용노동부

- ❖ 이 FAQ는 '22.1.20.~'22.3.31. 기간동안 지방관서 및 운영기관의 문의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- ❖ 그 외 개별적인 문의 중 전체 운영기관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송부할 계획입니다.

기업 요건 (지침 II)

- Q> 기준 피보험자 수는 지원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나요? ..1
- Q>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?1
- Q> 인력공급업 등의 업체에서 본사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, 기준 피보험자 산정시,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를 모두 포함하는지? 아니면 사업장의 직접 고용인원만 포함하는지?1
- Q> 인위적 감원 발생 후,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1
- Q>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나요?2
- Q> 사업지침(P.10)상 특수학교, 대안학교도 지원제외 대상인지? ..2
- Q> 고용보험상 건설업본사(41999) 코드를 가지고 있는, 전문건설 업체의 성장유망업종 적용 여부2
- Q> 청년창업기업 판단 시 중간에 대표(청년 아닌 자로)가 바뀐 경우에도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2
- Q> 기업이 공동대표일 때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기업으로 볼수 있는지?3
- Q> 사업지침(P.9)상 소비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이 부업종인 경우 지원제외되어야 하는지?3
- Q> 사업 양도양수(개인→법인 전환) 시 지원한도 산정은 어떻게?3
- 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던 사업장이,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수합병된 경우로 기존 지원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한지? ..4

청년 요건 (지침 Ⅲ-2, 3)

- Q>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?
..... 6
- Q>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 같은
근로형태(주기적, 장기간)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 상태라고
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하나요? 6
- Q>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
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? 6
- Q>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? 6
- Q>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
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
가능한지? 7
- Q>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이후
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취에 지속참여(재개)한
경우,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'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'
으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? 7
- 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,
최종학교에 방통대, 사이버대, 대학원도 포함되나요? 8
- 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요건에서, 가입기간이 정확히 12개월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
청년에서 제외되나요? 8
- Q>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
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 9
- Q>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, 청년의 자격요건을
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'계약직 채용일'인가요, '정규직 전환일'
인가요? 9

순 서

- Q> '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자'는 취업 중인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(지침 p.12)되는데,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됨. 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
..... 10
- Q> 방통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, 이 때 최종학력은 직전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? 11
- Q>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지원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시 차감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?
..... 11
- Q>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이 휴업은 하지 않았으나,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, 증빙자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? 11
- Q>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판단 시 대학재학기간 중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산입하여야 하는지? 12
- Q> 주간 대학생이 실제 수업을 야간에 듣는다면, 야간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? 12
- Q> 군필자에 대한 청년의 나이 연장은 사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?
..... 12
- Q>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은?
..... 12

채용 요건 (지침 Ⅲ-3)

- Q>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, 도약장려금 사업도 협약 체결일 이후 채용기한에 제한이 있나요? 13

순 서

- Q>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인원이 달라도 괜찮나요?
..... 13
- Q> 지난해('21년)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('22년) 정규직으로
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 13
- Q> '22년에 채용한 청년은 어떤 의미인가요? 14
- Q> 현장실습생 중 '21년 기준으로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
경우에도 실습생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한지? 21년도 취업자로
보아 지원제외 대상인지? 14
- Q> “3개월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”에서 즉시 전환의 의미는
무엇인가요? 14
- Q> 사업 참여 신청 시점과 채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
..... 15
- Q> 지원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, 잔여 개월에
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? ... 17
- Q>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, 인위적 감원에
해당하나요? 17
- Q>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이
발생한 경우,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 17
- Q>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 제한됨.
이 경우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인위적 감원 발생 후 6개월이
지난 시점에 사업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 18
- Q>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 이 경우 별도의
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? 18
- 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도중 다른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
(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관련) 기간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? 18

순 서

Q> 5인 미만 특례업종으로 참여신청한 사업장이 지원기간 중 다른 업종(특례업종 미해당)으로 변경시 지원은? 19

Q> 지원기간 중 소비향락 등 지원제외 업종으로 업종변경 시 지원은? 19

지원 내용 (지침 IV)

Q>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되는데, 기간제 근로자로 주 20시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후 주 30시간이 된다면 지원 가능한지? 20

Q>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입대, 육아휴직 등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기간의 도약장려금 지원은? 20

Q> 사업참여기업이 규모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 기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? 20

지원 절차 (지침 V)

Q> 기업이 자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? 21

Q>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21

Q> 동일한 사업주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을 두 개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 22

운영기관 목록 및 연락처

..... 23

기업 요건 (지침 II)

Q> 기준 피보험자 수는 지원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나요?

- ☐ 기준 피보험자 수는 기업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(5인 이상 기업 여부) 및 지원 한도를 판단할 때 활용됨

Q>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?

- ☐ 다른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라 하더라도, 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모두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됨

Q> 인력공급업 등의 업체에서 본사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, 기준 피보험자 산정시,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를 모두 포함하는지? 아니면 사업장의 직접 고용인원만 포함하는지?

- ☐ 직접고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, 해당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모두 기준 피보험자 수에 포함함

Q> 인위적 감원 발생 후,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- ☐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하는 경우, 재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기준 피보험자 수 및 지원 한도 등을 새롭게 산정함

* 해당 기업의 최초 참여 신청 시점의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적용되지 않음

Q>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나요?

- 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「고용보험법령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*이면 지원 가능함

* 구체적 요건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확인

Q> 사업지침(p.10) 상 특수학교, 대안학교도 지원제외 대상인지?

- ☐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되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, 대안학교는 지원제외 기업에 해당함

Q> 고용보험상 건설업본사(41999) 코드를 가지고 있는, 전문 건설업체의 성장유망업종 적용 여부

* 건설업은 특성상 2개의 사업장관리번호(1개는 일반 사업장관리번호(끝자리 0), 1개는 '일괄' 사업장관리번호(끝자리 6))를 부여받으며, 일반 사업장의 업종코드는 건설업본사(41999, 성장유망업종 아님)로 고정됨. '일괄'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전문건설업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

- ☐ '일괄' 사업장의 전문건설업 업종코드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며, 지자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았고, 동 사업장이 실제로 해당 업종을 수행한다면 이를 성장유망업종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함

Q> 청년창업기업 판단 시 중간에 대표(청년 아닌 자로)가 바뀐 경우에도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

- ☐ 사업 지침(p.7)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요건에 따라, ①청년(만15~39세)이 창업, ②도약장려금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(만15~39세), ③ 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면 지원 가능함

Q> 기업이 공동대표일 때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?

- ☐ 공동대표 중 1인이더라도 사업 지침(p.7)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보아 지원 가능함

Q> 사업지침(p.9)상 소비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이 부업종인 경우 지원제외되어야 하는지?

- ☐ 주업종, 부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비향락업 등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Q> 사업 양도양수(개인→법인 전환)시 지원한도 산정은 어떻게?

- ☐ 개인사업자(A)에서 법인사업자(B)로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의 모든 인적·물적 자원 및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, 이는 기업의 외형적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
- 따라서 B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산정할 때, A의 사업이력을 포함하여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를 산정하여야 함

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던 사업장이,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수 합병된 경우로 기존 지원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한지?

〈새로운 사업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〉

< 예시 >

1.20. 기존 사업주(장) A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

1.26. 기존 사업주(장) A 청년근로자 홍길동을 정규직으로 채용

5.1. 기존 사업주(장) A가 새로운 사업주(장) B에 인수합병됨

* 사업장 A, B, 청년근로자 홍길동은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

☐ 인수합병한 새 사업장(B)이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,

○ 기존 사업장(A)의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협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기 채용자(홍길동)에 대해 1.26.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

* 이 때, 지원한도는 새 사업장(B)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

** 청년 홍길동의 채용일과 사업장 B의 참여신청일은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함

☐ 인수합병한 새 사업장(B)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거나, 합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

○ 기존 사업장(A)의 참여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신청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청년근로자 홍길동은 관련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자(사업지침 p.11, 2-9)로 보아 지원이 불가함

〈새로운 사업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에 기 참여중인 경우〉

< 예시 >

- 1.20. 사업주(장) A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
- 1.26. 사업주(장) A 청년근로자 임꺽정을 정규직으로 채용
- 2. 1. 사업주(장) C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
- 5. 1. 사업주(장) A가 사업주(장) C에 인수합병됨
- * 사업장 A, C, 청년근로자 임꺽정은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

☐ 별도 사업신청 없이, 인수합병한 사업장(C)의 기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○ 사업장(C)의 기존 참여협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적용하되, 청년 근로자 임꺽정은 예외적으로 소속이 변경된(A→C) 것으로 보아 1.26.부터 지원 가능

* 청년 임꺽정의 채용일과 사업장 C의 참여신청일은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함

청년 요건 (지침 Ⅲ-2, 3)

Q>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?

☐ 워크넷 구직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

Q>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 같은 근로형태(주기적, 장기간)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상태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하나요?

☐ 이 경우에도 실업상태로 보고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됨

* 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

Q>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?

☐ 현장실습 기업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'22.1.1.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, 도약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

Q>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?

☐ 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(지침 p.18 참조),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함

*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
Q>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?

- 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“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,
 -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
- ☐ 따라서,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,
 -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,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

Q>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이후 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취에 지속 참여(재개)*한 경우,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‘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’으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?

* 국취 참여 중 취업하여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청년이 국취에 지속참여(재개)하는 경우,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‘일용근로’로 간주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(실업상태)으로 보는 것과 관련

- 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’ 요건으로 참여하려면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이후 ‘최초’ 취업한 경우여야 하며,
 -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
- *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속참여(재개)를 하게되면 기존 취업이 취소되어 최초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나(국취 자체 운영기준), 도약장려금은 이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속참여(재개)를 하더라도 기존 취업을 최초 취업으로 봄에 유의

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, 최종학교에 방통대, 사이버대, 대학원도 포함되나요?

☐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됨

○ 청년이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으로 참여하는 경우, 위 학교를 졸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 청년에 포함됨

☐ 아울러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‘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(지침 p.18 참조)’에 해당하는데,

*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
○ 이는 ‘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보가입 기간 12개월 미만’ 요건이 아닌,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(6개월 이상 실업, 국취 참여 등)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임

Q>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요건에서, 가입기간이 정확히 12개월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 청년에서 제외되나요?

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(365일,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366일) ‘미만’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, 12개월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Q>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

- ☐ '22.1.1.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경우,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- ☐ 방위산업체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, 계약직 채용일이 '22.1.1. 이후이고 계약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(지침 p.19 참조),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가능

Q>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, 청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'계약직 채용일'인가요, '정규직 전환일'인가요?

- ☐ 청년의 자격요건 확인일은 “계약직 채용일”임
- ☐ 따라서,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“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”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함

Q> '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자'는 취업 중인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(지침 p.12)되는데,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됨. 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

□ '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(지침 p.12)'에 기재된 '채용일'이란 '정규직 채용일'을 의미하며,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○ 즉,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직전 3개월 이내에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다면 '취업 중인 자'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

* 계약직으로 근로하던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(지침 p.19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요건을 적용)

□ 동일 사업주의 청년 재고용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한 청년에 대해 제한함(지침 p.11)에도 불구하고, 계약직·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직전 3개월 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Q> 방통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, 이 때 최종학력은 직전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?

□ 방통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, 일학습병행 참여자 등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나(사업지침 p.18), 이 경우에도 취업예청년 요건은 만족하여야 함

○ 단, 해당 청년들은 채용일 현재 ‘재학 중인 자’로서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, 특례①(고졸 이하 학력), 특례⑦(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기간 1년 미만) 요건으로는 참여가 불가함

*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(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7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1 적용 가능)

□ 다만, 학점은행제의 경우 공식적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강의 수강 및 학점 인정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*도 있으므로,

* 입학 및 졸업 기준이 없고, ‘재학 중인 학생’으로 별도 관리되지 않음

○ 학점은행제 참여자의 경우 ‘대학에 재학 중인 자’로 보지 않으며,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특례①(고졸 이하 학력) 또는 특례⑦(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기간 1년 미만) 요건으로도 지원이 가능함

* 학점은행제 참여 목적(학위취득 또는 단순 수강)을 엄밀히 구분·확인할 수 없으므로,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수강 중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

Q>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지원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시 차감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?

- ☐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대한 훈련지원금은 학습기업의 계속훈련을 지원하고,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책으로 그 성격은 인건비 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

Q>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이 휴업은 하지 않았으나,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, 증빙자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?

- 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채용일 현재, 「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, 취업중인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- 단,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로 보고 있음
- ☐ 이 경우 채용일 기준 직전 1년의 기간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통해 소득이 0원일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
- *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매년 5월)과 채용일 간의 시차로 인해, 채용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이 없었던 청년이 추후 동일 기간에 소득 발생 및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음(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)

Q>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 판단 시 대학 재학기간 중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산입하여야 하는지?

- ☐ 특례⑦ 요건 판단 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산정하며, 재학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입하지 않음

Q> 주간대학생이 실제 수업을 야간에 듣는다면, 야간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?

- ☐ 수업의 진행방식에 따라 주간대학생, 야간대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님
- 따라서, 주간대학의 재학생이 학과의 수업을 사이버 또는 야간에 수강한다하여 사이버대학생 또는 야간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

Q> 군필자에 대한 청년의 나이연장은 사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?

- ☐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청년의 나이 연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뿐만 아니라, 군인사법 제7조(의무복무기간)에 따른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함

Q>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은?

- 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은 취업애로청년 판단기준 “특례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” 요건을 적용하면 됨

채용 요건 (지침 Ⅲ-3)

Q>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, 도약장려금 사업도 협약체결일 이후 채용기한에 제한이 있나요?

□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협약 체결 후 '22.12.31.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이 가능함

Q>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인원이 달라도 괜찮나요?

□ 기업이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채용계획대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
□ 기업이 채용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지원은 기업별 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, 운영기관은 이 내용을 참여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

□ 기업이 채용계획보다 더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기업과 협의하여 채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음

○ 다만, 운영기관이 임의로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업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임

Q> 지난해('21년)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('22년)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?

□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'22년 중에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함

* '21.12.29.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2.1.14.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되지 않음

Q> '22년에 채용한 청년은 어떤 의미인가요?

☐ 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, '22.1.1.부터 '22.12.31.까지 채용해야 함을 의미함

☐ 기업이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,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 모두 '22.1.1.부터 '22.12.31.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

* '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(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된 경우에 대해서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임

Q> 현장실습생 중 '21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습생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한지? '21년도 취업자로 보아 지원제외 대상인지?

☐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'22년에 신규로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, '21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Q> “3개월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”에서 즉시 전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
☐ '22.1.1.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(3개월 종료 즉시 전환된 경우 포함)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

☐ 이때 “즉시 전환”의 의미는 ‘기간제’와 ‘정규직’ 사이에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함을 의미하며,

○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,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* '22.3.9.~'22.6.8. 기간제 신분으로 근로하고, '22.6.10.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,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Q> 사업 참여 신청 시점과 채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?

※ 청년 채용 및 참여신청 관련 내용(지침 p.19~20)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

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·승인 이후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

☐ 이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가 있음

① 사업참여 신청·승인 후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

☞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함(단, '22.12.31.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

* '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(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된 경우에 대해서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임

②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

☞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 가능함(단, 22.1.1이후 채용)

③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

☞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*할 경우 지원 가능함(단, 22.1.1.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, '22.12.31.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**)

* 이 경우 정규직 전환 시기는 사업 참여 신청 전(前)일 수도 있고 후(後)일 수도 있음

** '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'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(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)된 경우에 대해서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임

		청년의 최초 채용 시점	
		사업 참여 신청 전	사업 참여 신청 후
청년의 최초 채용 형태	정규직 채용	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채용 시 가능	가능 (원칙)
	기간제 채용 → 정규직 전환 (3개월 내)	기간제 채용이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이루어지면 가능 (채용 및 전환 모두 '22년 내)	기간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'22년 내에 이루어지면 가능

(예) △△기업에서 '22.4.10.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청년 A~K에 대해
지원받고자 하는 경우

* 기업 및 채용된 청년이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

'21.12.17	A 기간제 채용	(A) '21년에 기간제 채용 → 지원대상×
'21.12.23	B 정규직 채용	(B) '21년에 정규직 채용 → 지원대상×
'22.1.5	C 정규직 채용	(C) '22년에 정규직 채용되었으나, 참여 신청 직전 3개월보다 이전에 채용 → 지원대상×
'22.1.11	참여 신청 3개월 전	(D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 → 지원대상○
'22.1.12	D 정규직 채용 E 기간제 채용	(E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기간제로 채용되어,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○
'22.3.16	A 정규직 전환	(F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기간제로 채용되어,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○
'22.3.30	F 기간제 채용 G 기간제 채용	(G) 참여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기간제로 채용되었으나, 이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×
'22.4.5	E 정규직 전환	(H) 참여 신청 후 정규직 채용 → 지원대상○
'22.4.10	참여 신청	(I) 참여 신청 후 기간제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○
'22.5.11	H 정규직 채용 I 기간제 채용	(J) 참여 신청 후 정규직 채용 → 지원대상○
'22.6.29	F 정규직 전환	(K) 참여 신청 후 기간제로 채용되었으나 '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 → 지원대상×
'22.7.1	G 정규직 전환	* 단, '23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여부는 '23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
'22.8.10	I 정규직 전환	
'22.12.29	J 정규직 채용 K 기간제 채용	
'23.1.28	K 정규직 전환	

Q> 지원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, 잔여 개월에 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☐ 기업이 특정 청년에 대해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청년이 12개월 지원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,

○ 기업이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

*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, 기업의 지원한도에서도 차감

☐ 단,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 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 1회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,

○ 해당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, 새롭게 채용된 청년으로 12개월 지원이 가능함

Q>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,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?

☐ 자발적 퇴사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음

Q>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,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
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이 중단되며,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

**Q>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 제한됨.
이 경우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인위적 감원 발생 후 6개월이
지난 시점에 사업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**

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에서 재참여 제한 기간(6개월) 내에
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* 재참여 신청 이후에도 해당 청년에 대해 지원 불가

○ 만약 재참여 제한기간 동안 채용된 청년에 대해 사후 참여신청을
통해 지원할 경우, 인위적 감원 후 6개월 재참여 제한 규정이
무력화되기 때문임

☐ 다만,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 산정 시 해당 청년은 포함될 수 있음

* (예) '22.1.20. 참여 신청한 기업에서 '22.3.15.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, 6개월이
지난 '22.9.15.부터 재참여 신청이 가능함. 이 때, '22.9.15.부터 직전 3개월 이내
(예컨대 '22.8.7)에 청년을 채용하여 재참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청년에 대한
지원이 불가능함 → '22.9.15. 사업 재참여 시 '기준 피보험자 수' 산정에는 포함됨

**Q>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 이 경우
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?**

☐ 청년이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며, 근태 관리 및
근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

**Q>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도중 다른 사유로 지원금 지급
제한(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관련) 기간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?**

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서는
지원하지 않음

* (예) A사업장에서 청년 甲을 '22.1.1. 채용하고, 甲은 '22.12.31.까지 정상근로함.
A사업장이 다른 사유로 '22.6.1.~8.31.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,
청년 甲에 대해서는 1회차 지원금('22.1.1.~5.31.), 2회차 지원금('22.9.1~10.31.),
3회차 지원금('22.11.1~12.31.) 지급 가능 <'22.6.1.~8.31 기간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>

Q> 5인 미만 특례업종으로 참여신청한 사업장이 지원기간 중 다른 업종(특례업종 미해당)으로 변경시 지원은?

☐ 기 채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기간 보장

Q> 지원기간 중 소비향락 등 지원제외 업종으로 업종변경 시 지원은?

☐ 업종변경 시점부터 지원불가함

지원 내용 (지침 IV)

Q>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되는데, 기간제 근로자로 주20시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후 주 30시간이 된다면 지원 가능한지?

□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은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
이므로, 정규직 기간 동안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의
근로조건과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음

* 단, 해당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여부는 계약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
Q>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입대, 육아휴직 등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기간의 도약장려금 지원은?

- 근로자의 개인사유(휴직, 군입대 등)로 인해 사업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,
- 청년을 채용하고 직후 1년간의 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면 됨

< 예시 >

22.1.1. 입사, 월 임금 190만원

22.4.1.~22.6.15.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

22.7.15. 개인사정 퇴사

→ 1회차 지원금은 '22.1.1~3.1.(매월 80만원), 6.16.~6.30.(일할계산)에 대해서 지급하며, 근로하지 않은 '22.4.1~6.15.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

2회차 지원금은 '22.7.1~7.14.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

Q> 사업참여기업이 규모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?

□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기간(유예기간 포함) 중에 채용된 인원
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을 보장하며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간에
채용된 인원에게는 지원이 불가함

지원 절차 (지침 V)

Q> 기업이 자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☐ 할 수 없음

- 기업은 자기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만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

Q>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은 “사업”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

※ ‘동일한 사업’임에도 본사·지사 등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참여신청 방법

- ① 동일한 사업주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하나의 사업이라면 관련사업장으로 묶어서 신청해야 함(전산 반영)
- ②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정보로 참여신청을 하고,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사 정보에 관해 운영기관에 별도 통보하여야 함 → 운영기관은 기 승인된 본사 참여신청서에 기업이 통보한 지사 사업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

☐ 다만, 하나의 사업이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(지사) 단위로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

Q> 동일한 사업주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을 두 개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비록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, 각 사업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
- 다만, 동일한 청년에 대해 동일한 사업주의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

(본사) A : 사업주 甲
(지사) A-1
(지사) A-2
(지사) A-3

(본사) B : 사업주 甲
(지사) B-1
(지사) B-2

-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 A와 B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일 경우 甲은 A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과 B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게 각각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
 - A, A-1, A-2, A-3가 하나의 사업이므로 A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. 다만, A, A-1, A-2, A-3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, 노무관리 및 회계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A, A-1, A-2, A-3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이 각각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 (B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)
 - A에서 채용되어 A-2에서 일하던 청년(乙)을 대상을 A가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고, 乙이 퇴사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B에 채용되어 B가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되어 지원이 제한됨
 - A-1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A-3에서 근무하는 경우는, '동일 사업' 내에서 근무하는 사업장만 변경된 것이므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
 - A-1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B-2에서 근무하는 경우는, A와 B는 사업주만 같을 뿐 서로 '다른 사업'이므로,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되어 지원이 제한됨
- * A(A-1, A-2, A-3 포함), B(B-1, B-2 포함)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서울고용센터	(주)메이크인	02-2291-7070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울고용센터	(주)잡모아동대문지점	02-2273-8886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울고용센터	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	02-2230-2123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울고용센터	인크루트알바콜(주)	02-2186-9059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울고용센터	스텝스(주)	02-2178-8079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울고용센터	(사)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6709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울고용센터	(주)한국직업개발원 중부지사	02-6336-0546	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
서초고용센터	(주)제니엘	02-580-0192~4	서초구
서초고용센터	(사)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	02-6949-3930	서초구
서초고용센터	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	02-6929-0011	서초구
서초고용센터	(주)스카우트 서초지사	02-2188-6805	서초구
서초고용센터	(주)지애스씨넷 서울지점	02-1811-8652	서초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주)맥시머스	070-8633-6949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인지어스(유)	02-2188-2038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사)한국고용복지센터 서울강남점	070-4269-2617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커리어넷 서울강남지사	02-6953-6532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주)이음길에이치알 강남지사	02-6229-2274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주)프로뱅크	02-6925-1397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주)티이에스	02-2088-8757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주)유니에스 강남센터	02-6011-1447	강남구
서울강남고용센터	(주)스카우트	02-2188-6729	강남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한국직업개발원	070-4373-5021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	02-475-0110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서울숲센터	02-2284-0077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스카우트 동부지사	02-6457-1180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코리아잡스원 서울지점	070-4204-1279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잡모아 천호지점(분사무소)	1599-0190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사)한국취업능력개발원	02-3409-8217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대신기술능력개발원취업센터	02-486-5353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동부고용센터	(주)유니에스 동부센터	02-6011-1471	강동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서울서부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	070-4613-4896	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
서울서부고용센터	(주)유니에스 서부센터	02-6011-1326	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
서울서부고용센터	(사)한국평생교육협회	02-6378-3100	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
서울서부고용센터	케이잡스(주)	02-798-8575	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
서울서부고용센터	워크트랜드(주)	02-6091-0072	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
서울서부고용센터	(주)잡모아 서부지점	02-332-8380	마포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은평구
서울남부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	070-4613-4820	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
서울남부고용센터	(주)잡모아	02-2602-6566	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
서울남부고용센터	(주)아이피시	070-4801-3865	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
서울남부고용센터	(주)티이에스 남부센터	02-2637-2923	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
서울남부고용센터	(주)제이앤비컨설팅	02-2098-1059	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
서울남부고용센터	(사)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	02-2658-0958	양천구, 영등포구, 강서구
서울북부고용센터	(주)잡모아 북부지점	02-991-7743	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강북구, 성북구
서울북부고용센터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센터	070-4837-4527	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강북구, 성북구
서울북부고용센터	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	02-6925-5875~6	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강북구, 성북구
서울관악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서울지점	02-889-7502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관악고용센터	(사)한국고용협회	02-6952-5763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관악고용센터	케이잡스 구로지사	02-6959-1069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관악고용센터	(사)한국취업능력개발원	02-6951-1712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관악고용센터	(사)벤처기업협회	02-6331-7043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관악고용센터	(주)커리어넷	02-2006-9534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서울관악고용센터	(주)잡모아 관악지점	02-878-0045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
인천고용센터	(사)인천벤처기업협회	032-817-2900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고용센터	(주)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	032-225-3139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고용센터	(주)이노스잡	032-421-5202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인천고용센터	(주)제니엘 인천지점	032-710-8790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고용센터	(주)미래서비스	032-216-0061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고용센터	(주)잡모아 인천남부지점	1599-0190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고용센터	(사)인천경영자총협회	032-428-8050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고용센터	(주)휴먼잡트러스트	070-4257-8839	인천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
인천북부고용센터	(주)휴먼잡트러스트 계양지점	032-543-5717	인천시 부평구·계양구
인천북부고용센터	(주)맥시머스 부평지점	032-710-4018	인천시 부평구·계양구
인천서부고용센터	(주)잡모아 인천서부지점	032-563-2265	인천시 서구·강화군
부천고용센터	(주)잡모아 부천지점	032-322-8669	부천시
부천고용센터	케이잡스(주) 부천지사	032-351-9957	부천시
부천고용센터	(주)이노스잡 부천지점	032-325-3301	부천시
김포고용센터	(주)미래고용정보	031-984-9001	김포시
김포고용센터	(주)명은커리어 김포센터	031-926-3190	김포시
의정부고용센터	(주)미래고용정보 대진대사무소	031-539-1068	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의정부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의정부지사	031-928-5675	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의정부고용센터	(주)명은커리어 북부지사	031-928-6226	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의정부고용센터	스텝스(주) 의정부센터	031-879-5161	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의정부고용센터	케이잡스(주) 남양주시사	070-7719-5591	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의정부고용센터	(주)잡모아 의정부지점	031-872-5558	의정부시·포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
고양고용센터	(주)명은커리어	031-926-3422	고양시·파주시
고양고용센터	(주)조인스잡 고양지사	031-926-3154	고양시·파주시
고양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파주지점	031-948-1480	고양시·파주시
고양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고양지사	031-963-8968	고양시·파주시
수원고용센터	(주)잡모아 수원지점	031-271-6404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사)한국고용협회 수원지사	031-546-8970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주)채움에이치알디 수원지사	031-546-3548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주)스카우트 수원지사	031-211-2416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수원고용센터	(사)경기경영자총협회	031-8014-5499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사)이엘티에스연구원 화성지사	031-292-8092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용인상공회의소	031-332-9812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화성상공회의소	031-350-7971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	031-8064-1086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	031-213-5524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수원고용센터	(주)명은커리어 경기지사	031-895-6265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
성남고용센터	(주)잡모아 성남지점	031-744-8886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스텝스(주) 성남센터	031-759-0993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주)굿잡	031-698-3347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주)제니엘 성남지사	031-778-8818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분당지사	031-8023-9102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주)메이크인 성남지사	031-778-6299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주)지오코칭 성남지사	02-2275-2557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사)한국바이오협회	031-628-0024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	031-628-9660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성남고용센터	광주하남상공회의소	031-761-9090	성남시, 경기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
안양고용센터	(주)잡모아 안양지점	031-464-8885	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
안양고용센터	(주)잡모아 광명지점	02-2686-1112	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
안양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	031-468-8212	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
안양고용센터	안양과천상공회의소	031-447-9170	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
안산고용센터	(주)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	070-5165-6033~4	안산시, 시흥시
안산고용센터	시흥상공회의소	031-501-5700	안산시, 시흥시
안산고용센터	(주)제이오비 시흥	031-319-9297	안산시, 시흥시
안산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산	031-487-9113	안산시, 시흥시
평택고용센터	(주)코리아잡스원 (평택)	070-4411-9211	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평택고용센터	(주)리부트코리아안성센터	031-8053-9691	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평택고용센터	(주)조인스잡	031-647-6995	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평택고용센터	오산상공회의소	031-373-7441	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춘천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	033-256-8828	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화천군, 인제군, 가평군(경기도)
춘천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강원지회	033-262-2097	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화천군, 인제군, 가평군(경기도)
춘천고용센터	케이잡스 춘천지사	033-264-0134	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 화천군, 인제군, 가평군(경기도)
강릉고용센터	강릉상공회의소	033-643-4411	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
강릉고용센터	(주)맥시머스	070-7543-2062	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
원주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	033-813-0013	원주시, 횡성군
원주고용센터	원주상공회의소	033-743-2991~4	원주시, 횡성군
원주고용센터	(사)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	033-743-1541	원주시, 횡성군
태백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(강릉)	033-641-8819	태백시, 삼척시
영월고용센터	원주상공회의소 (영월)	033-743-2991~4	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
부산고용센터	(주)커리어넷 부산지사	051-803-7037	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
부산고용센터	부산상공회의소	051-990-7088	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
부산고용센터	부산희망리본 사회적협동조합	051-714-5147	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
부산고용센터	(사)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	051-807-7904	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
부산고용센터	(사)부산경영자총협회	051-647-5530	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
부산동부고용센터	(주)잡스토리 수영구지점	070-4447-6882	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
부산동부고용센터	(주)커리어다움	051-582-8633	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
부산동부고용센터	(주)스마트소셜	051-717-2686	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
부산동부고용센터	(사)부산경영자총협회 동부산지소	051-741-1134	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
부산북부고용센터	인지어스(유) 부산북부지사	051-921-2280~2	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
부산북부고용센터	(주)두원잡	051-327-3345	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
부산북부고용센터	(주)빛슬인재개발원	051-365-1915	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
부산북부고용센터	(사)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	051-328-9194	부산 북구, 사상구, 강서구
창원고용센터	창원상공회의소	055-210-3093	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
창원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경남지회 (이노비즈협회경남지회)	055-295-2360	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창원고용센터	(사)경남경영자총협회	055-263-0283	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
창원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창원지사	055-261-3264	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
울산고용센터	(주)좋은일자리	052-263-3500	울산
울산고용센터	(주)아이앤제이 커리어컨설팅센터	052-222-9411	울산
울산고용센터	퍼스트인잡(주) 울산사무소	052-708-2488	울산
울산고용센터	(주)위더스	052-222-1272	울산
김해고용센터	인지어스(유) 김해지사	055-904-3559/3560	김해시, 밀양시
김해고용센터	(주)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	055-723-2042	김해시, 밀양시
김해고용센터	(주)케이엔잡 김해지사	055-312-3574	김해시, 밀양시
양산고용센터	(주)두원잡 양산사무소	055-785-0110	양산시
진주고용센터	진주상공회의소	055-753-0413	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하동군, 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
진주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	055-794-1015	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하동군, 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
통영고용센터	(사)한국커리어 경남지사	055-990-8829	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
대구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	053-710-1263	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
대구고용센터	(주)커리어스타	053-384-8840	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
대구고용센터	(재)대구직업전문학교	053-350-1000	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
대구고용센터	(주)브레인폴	053-627-3400	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
대구고용센터	경산상공회의소	053-811-3031	대구(중구,수성구,북구,동구)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
대구서부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대구지점	053-525-1470	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
대구서부고용센터	칠곡상공회의소	054-974-0850	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
대구서부고용센터	(주)커리어스타 달서점	053-628-8841	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
대구서부고용센터	(주)코잡 대구서부지점	053-716-6677	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대구서부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	053-745-4703	대구(달서구,달성군,서구,남구)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3공단 제외)
포항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포항지점	054-285-1949	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
포항고용센터	인지어스(주) 포항남구지사	054-614-0462	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
구미고용센터	(사)경북경영자총협회	054-461-5522	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(석적3공단)
구미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구미지점	054-456-1470	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(석적3공단)
영주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영주지점	054-631-1470	영주시, 문경시, 상주시, 봉화군
안동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안동지점	054-854-1470	안동시, 예천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
광주고용센터	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	064-756-5425	제주도
광주고용센터	이노비즈(중소기업기술혁신)협회 광주전남지회	062-363-1333, 0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(사)지역고용정책연구원	062-652-2070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(사)광주경영자총협회	062-716-3424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전남경영자총협회 나주시부	061-725-7040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국제커리어센터	062-464-5411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인지어스(유) 광주지사	062-454-8031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내일엔 광주	062-716-2841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광주고용센터	(주)스카우트 광주지사	062-514-6477	광주광역시, 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장성군, 화순군, 영광군, 함평군, 제주도
전주고용센터	(사)전북경영자총협회	063-282-3393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전주고용센터	(사)이엘티에스연구원 전주지사	063-251-8083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
전주고용센터	(주)베스트인 전북지사	063-715-3596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
전주고용센터	(주)제이비커리어	063-237-4135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
전주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	063-213-2356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
전주고용센터	전주상공회의소	063-280-1150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순창군
익산고용센터	(유)드림워크	063-835-5337	익산시, 김제시
익산고용센터	인지어스(유) 익산지사	063-918-2156	익산시, 김제시
군산고용센터	(주)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	063-451-7521	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
군산고용센터	군산국제커리어센터	063-464-9670	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
목포고용센터	중앙잡커리어	061-800-6606	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진도군, 강진군, 완도군, 장흥군, 해남군
목포고용센터	목포상공회의소	061-242-8581	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진도군, 강진군, 완도군, 장흥군, 해남군
목포고용센터	목포국제커리어센터	061-281-7114	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진도군, 강진군, 완도군, 장흥군, 해남군
순천고용센터	전남경영자총협회	061-741-8114	순천시, 보성군, 고흥군, 여수시, 광양시
순천고용센터	여수상공회의소	061-641-4006	순천시, 보성군, 고흥군, 여수시, 광양시
순천고용센터	광양상공회의소	061-793-0012	순천시, 보성군, 고흥군, 여수시, 광양시
대전고용센터	(사)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	043-368-9716	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대전고용센터	(사)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	042-256-7051	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대전고용센터	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	042-861-2200	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대전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	042-223-0135	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대전고용센터	(주)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	070-4411-1411	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대전고용센터	(주)스카우트 대전지사	042-822-2410	대전광역시, 금산군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
관할고용센터명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세종고용센터	(사)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	044-905-1614	세종시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세종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	044-864-1490	세종시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
청주고용센터	(사)충북경영자총협회	043-221-1390	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
청주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청주지점	043-264-1951	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
청주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	043-235-2884	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
청주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	043-714-3042	청주시, 옥천군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영동군
천안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	041-522-7980	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
천안고용센터	(주)한국커리어잡스	041-556-2829	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
천안고용센터	인지어스(유) 천안지사	041-903-0351	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
천안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	041-563-1194	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
천안고용센터	충남북부상공회의소	041-559-5763	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
충주고용센터	충주상공회의소	043-843-7004	충주시, 음성군
충주고용센터	(주)제이비커리어	043-857-8219	충주시, 음성군
제천고용센터	제천단양상공회의소	043-642-3114	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
보령고용센터	(주)지이라인	041-933-9655	보령시, 홍성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
서산고용센터	서산상공회의소	041-663-3063	서산시, 태안군